

## 국가장학금 운영 규정

(제정 2013. 5. 29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국가장학금제도(I유형 및 II유형)를 운영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제반 서류 를 제출하여 국가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된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
**제3조(국가장학금 운영위원회)** ① 국가장학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장학금 운영위원회 (이하 “운영위원회”)를 두며, 운영위원회는 본교 장학심의위원회가 그 업무를 겸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국가장학금 장학사업의 운영
2. 국가장학금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
3. 장학사정관계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

**제4조(수혜대상)** 수혜대상은 매 학년도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선발자격을 충족한 학생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부 재학생으로 한다.

1.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소득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학생(한국장학재단의 심사자료에 따름)
2.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취득학점 및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(다만,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운영위 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)
3. 정규학기 기준 8학기 이내에 재학 중인 학생(다만, 건축학과(5년제)의 경우 10학기 이내)

[본조개정 2016.7.19.]

**제5조(수혜기간)** 국가장학금은 매 학기 학생이 신청하여야 하며, 수혜기간은 신청한 해당 학기에 한한다.

**제6조(장학금액 및 지급 기본방침)** ① 국가장학금 I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여 한국장학재 단에서 정하는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금액에 따른다.

②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국가장학금 I유형을 수혜하는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교가 지원받은 장학금액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③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소득분위별 하후상박 형으로 차등 지급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, 기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하는 장학금 지급 기준을 최대한 준용하여 운영한다.

**제7조(중복수혜)**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다른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. 다만, 등 록금 보전 목적이 아닌 교내외 장학금(근로장학금, 생활비 지원 등)에 대하여는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**제8조(지급방법)** ①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납부 시 우선감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신입생, 편입생, 복학생, 재입학생 등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의 경우는 본교 등록금 수납기간 동안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 대하여 사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9조(장학금 반환)**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반환 처리한다.

1. 학기 중에 자퇴, 제적된 자
2. 학기 중에 미등록 휴학한 자
3. 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
4. 장학금 신청서의 기재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
**제10조(국가장학금 II유형 장학사정관계)**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정관계 장학금 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, 장학사정관계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하는 기준 및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.

**제11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국가장학금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